|  |  |  |
| --- | --- | --- |
| **공업기업 제품품질 분류 감독관리 시행방법 공포에 대한 공고**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령  2012년 제74호  공업제품의 품질 감독관리를 보강하고 제품의 품질감독관리 효능을 제고시키고 공업기업에서 제품 품질안전 주체책임을 이행하도록 독촉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식품 등 제품안전 감독관리 보강에 대한 국무원의 특별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제품생산허가증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질검총국은 《공업기업 제품품질 분류 감독관리 시행방법》을 제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포한다. 각 성(구, 시) 품질기술감독부서는 본 지역의 실제에 결부시켜 열심히 집행하기 바란다.  첨부: 공업기업 제품품질 분류 감독관리 시행방법  2012년 5월 8일  **공업기업 제품품질 분류 감독관리**  **시행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지방 품질기술감독부서(이하 질검부서라 함)의 제품품질 감독 관리를 지도하여 감독관리 효능을 높이고 생산기업을 독촉하여 품질안전주체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식품 등 제품안전 감독관리 보강에 대한 국무원의 특별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제품생산허가증 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조례》 등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공공안전, 인체건강과 생명재산 안전과 관계되는 중요한 공업제품 생산기업(관련 법률 법규와 직능분공에서 질검부서에서 제품품질감독을 명확히 규정한 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제품품질감독 분류관리에 적용한다.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 화장품, 계량기기 및 특종설비 생산기업에 대한 감독관리는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기타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제3조** 이 방법에서의 분류감독관리라 함은 질검부서에서 제품품질안전 리스크정도, 기업의 제품품질주체 책임 이행상황과 실현정도에 근거하여 기업분류를 실시하는 것을 바탕으로 제품품질 감독관리 직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종합 감독관리방법을 가리킨다.  **제4조** 분류 감독관리 업무는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단계별로 실시하며 과학적이고 효율적이며 공정 공평한 원칙을 준수한다.  **제5조**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질검총국이라 함)은 전국 공업기업 제품품질 분류 감독관리업무(이하 분류 감독관리업무라 함)를 관리, 지도하고 기업분류원칙과 감독관리 제도를 제정하며, 각 성(자치구, 직할시) 질검부서의 분류 감독관리업무 실시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각 성(자치구, 자치구) 질검부서(이하 성급 질검부서라 함)는 이 방법의 요구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실제에 결부시켜 본 행정구역의 분류 감도관리 시행방법을 제정하고 본 행정구역의 분류 감독관리 업무를 조직, 실시하며, 분류 감독관리 업무 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각 시(구), 현 질검부서(이하 기층 질검부서라 함)는 본 지역의 실제에 결부하여 기업분류, 감독관리 실시 등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책임지고 전개한다.  **제6조** 분류 감독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기구와 인원은 직무에 충실하고 책임을 다하며, 법에 따라 행정하고 감독관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2장 기업 분류**  **제7조** 기업분류란 질검부서에서 제품품질 분류 감독관리 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업기업 제품품질 분류 감독관리 통용규칙》(이하 통용규칙이라 함, 첨부 참조)에 의거 기업의 제품품질 주체책임의 이행 보장능력과 실현정도에 대하여 분류를 실시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제8조** 통용규칙은 기층 질검부서에서 기업분류와 감독검사를 실시하는 주요 의거이다. 성급 질검부서는 본 지역의 감독관리 업무의 실제에 결부시켜 통용규칙 시행세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9조** 통용규칙에서 규정한 분류 감독관리정보에는 주로 제품품질안전리스크정도 정보, 기업 제품품질 주체책임의 이행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제10조** 성급 질검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기업분류 정보 감독관리를 책임지고 실시한다. 기층 질검부서는 통용규칙과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주로 일상적 감독관리 활동을 통하여 관할구내의 기업분류 정보를 수집하고 그에 대한 확인과 업데이트를 처리한다.  **제11조** 통용규칙에 근거하여 기업의 제품품질 주체책임 이행 보장능력과 실현정도를 AA、A、B、C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한다.  AA류 기업: 제품품질 주체책임을 이행하는 보장능력이 강하고 실현정도가 양호한 우수한 자율 기업으로서 법률, 법규를 진지하게 준수하고 품질관리체계가 효율적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품질안전책임을 적극 수행하고 제품품질의 지속적 안정과 합격을 유지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A류 기업: 제품품질 주체책임을 이행하는 보장능력이 비교적 강하고 실현정도가 비교적 양호한 자율 기업으로서, 스스로 제품품질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제품품질관리체계가 효율적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제품품질의 지속적 안정과 합격을 유지하는 기업을 기리킨다.  B류 기업: 기본적인 제품품질 이행 보장능력을 갖춘 기업으로서 제품품질의 기본적 안정을 유지하고 실증을 거쳐 매체에 피로되거나 소비자의 강렬한 반응을 초래한 제품품질문제가 없는 기업을 가리킨다.  C류 기업: 제품품질 주체책임을 이행하는 보장능력이 비교적 약한 기업으로서, 최근 3년간 성급 이상 제품품질 감독 표본검사에서 2회(포함) 이상 불합격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제품품질 감독 표본검사를 거부한 행위가 존재하거나 제품품질 행정처벌 상황이 존재하거나 또는 실증을 거쳐 매체에 피로되거나 소비자의 강렬한 반응을 초래한 제품품질문제가 존재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모든 기업은 반드시 제품품질 주체책임을 이행한 기록을 진실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기층 질검부서는 통용규칙과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관할구 내 기업 분류를 실시하며, 아울러 기업분류 결과를 상급 질검부서에 보고하여 비안(備案)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업분류 상황은 제품품질 감독업무 정보에 속한다. 기업은 분류결과를 제품표지에 인쇄하거나 광고, 홍보 등의 상업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3장 분류 감독관리방식**  **제14조** 기층 질검부서가 기업분류 상황에 근거하여 본 관할구 내 기업의 실제에 결부시켜 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독검사 형식에는 주로 제품품질 감독 표본검사, 정기 감독검사, 특별 감독검사 및 방문이 포함된다.  **제15조** 정기 감독검사라 함은 질검부서에서 계획적으로 기업에 대해 실시하는 감독검사와 일상적 순회검사를 가리킨다. 중복 검사를 피면하기 위하여 원칙상 성급 질검부서에서 통일적으로 본 행정구역의 정기 감독검사 또는 일상적 순회검사 계획을 제정하며, 기층 질검부서는 통용규칙과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항목에 따라 기업에 대한 정기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제16조** 특별 감독검사라 함은 질검부서에서 제품품질 안전문제가 심각한 중점 제품, 중점기업 및 중점업종에 대하여 실시하는 전문적인 감독검사를 가리킨다.  **제17조** 방문은 기층 질검부서에서 감독 검사 중에서 발견한 기업의 제품품질 문제, 품질 불법행위의 시정 조치상황에 대한 검증을 가리킨다.  **제18조** 기층 질검부서는 성급 질검부서에서 제정한 실시방법에 따라 본 지역의 실제에 결부하여 부동한 유형 기업에 대한 부동한 감독검사 형식을 확정한다. 원칙은 아래와 같다.  (1) AA류 기업에 대하여는 신용 감독관리방식을 취하며, 주로 기업의 자기승낙 이행상황을 감독 검사한다.  ① 기업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질검부서에 자기승낙 이행상황을 보고하고 사회 각계에서 반영한 제품품질문제에 대하여 적극 응대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② 질검부서는 필요에 따라 기업의 자기승낙 이행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③ 질검부서는 기업이 제품품질 주체책임을 적극 이행하는 것을 지지하며, 기업이 정부 품질상 등 품질장려를 받도록 우선적으로 추천한다.  (2) A류 기입에 대하여는 책임 감독관리 방식을 취하며, 주로 기업의 제품품질 주체책임 이행 상황을 감독한다.  ① 기업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질검부서에 제품품질 주체책임 이행상황을 보고하고 사회 각계에서 반영한 제품품질 문제에 대하여 적극 응대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② 질검부서는 감독관리 필요와 사회의 피드백 정보에 따라 기업의 제품품질 주체책임 이행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③ 질검부서는 기업이 제품품질 주체책임 이행능력을 부단히 제고하도록 지도하고 지원한다.  (3) B류 기업에 대하여는 일상적인 감독관리 방식을 실시하며, 주로 아래의 감독관리 조치를 취한다.  ① 기업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질검부서에 제품품질 주체책임 이행상황을 보고하고 사회 각계에서 반영한 제품품질 문제에 대하여 적극 응대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② 질검부서는 본 지역의 실제에 따라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③ 질검부서는 기업이 품질관리, 검사검측, 계량 및 표준체계를 부단히 완벽히 하고 제품품질 주체책임 이행 의식과 능력을 보강하도록 지도한다.  (4) C류 기업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감독관리 방식을 실시하며, 제품 리스크정도와 기업의 실제에 따라 주로 아래의 감독관리 조치를 취한다.  ① 기업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질검부서에 제품품질 주체책임 이행상황을 보고하고 사회 각계에서 반영한 제품품질 문제에 대하여 적극 응대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② 질검부서는 기업을 본 관할구내의 중점 감독관리 기업에 넣어 관리한다.  ③ 질검부서는 실제 상황에 비추어 더욱 엄격한 감독관리 요구에 따라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④ 감독검사 상황에 근거하여 제품품질 주체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기업 책임자와 인터뷰를 하며 동시에 기업에 기한부 정돈 개선하도록 명령한다.  ⑤ 이미 품질장려와 기타 품질 지원정책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취소하거나 또는 유관부서에 취소하도록 건의한다.  **제19조** 기층 질검부서가 기업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법에 따라 자료사열, 현장실사, 제품 표본검사 등의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실시하는 감독검사는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경영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부당 이익을 얻어서는 아니된다. 기업은 법에 따라 스스로 감독검사에 협조하고 사실대로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해당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20조** 국가질검총국은 공업제품 품질안전리스크정보에 근거하여 리스크등급 평가를 실시하고 공업제품품질을 리스크정도에 따라 Ⅰ급(고위험), Ⅱ급(중등위험), Ⅲ급(일반위험)으로 구분하며 동시에 수시로 중점 공업제품품질감독리스트를 발표한다. 질검부서는 관할구 내 공업제품 및 기업의 실제에 결부시켜 평가를 실시한 후 본 지역의 Ⅰ급(고위험)과 Ⅱ급(중등위험) 제품리스트를 증가할 수 있다.  기층 질검부서는 엄격한 감독관리 원칙에 따라 확정된 Ⅰ급(고위험) 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감독관리 방식을 이 방법 제18조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게 1급을 하향 조정하여야 하며, Ⅱ급(중등위험)과 Ⅲ급(일반위험) 제품으로 확정된 생산기업에 대하여는 본 관할구내의 실제에 결부시켜 감독관리 방식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 질검부서는 감독검사 상황에 결부하여 이 방법에서 규정한 직책 권한에 따라 기업의 분류와 분류 감독관리방식에 대한 동적 조정을 실시하며, 조정 주기는 원칙상 1년으로 한다. 기업분류는 월등하여 상향 조정할 수 없으나 월등 하향 조정은 가능하다. 기업에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발생한 경우에는 강등 처리하고 동시에 감독관리 방식을 상응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1) 관련 품질 법률법규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2) 기업 품질보증능력에 엄중한 폐해가 존재하는 경우  (3) 제품품질 감독 표본검사에 불합격인 경우  (4) 소비자의 반응이 강렬하거나 신문매체에 피로된 제품품질 문제가 발생한 경우  (5) 강등처리를 하여야 하는 기타 상황이 나타난 경우.  **제22조** 질검부서에서 분류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과정에 기업의 품질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부 칙**  **제23조** 이 방법에서 규정한 분류 감독관리란 기업의 제품품질 주체책임 이행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관리 방식으로서 관련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제품품질 감독조치를 대체할 수 없다.  **제24조** 이 방법은 국가질검총국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5조** 이 방법은 공표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시행한다.  첨부: 공업기업 제품품질 분류 감독관리 통용규칙 |  | **关于公布《工业企业产品质量**  **分类监管试行办法》的公告**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2012年第74号    为加强工业产品质量监督管理，提高产品质量监管效能，督促工业企业落实产品质量安全主体责任，根据《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国务院关于加强食品等产品安全监督管理的特别规定》、《中华人民共和国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条例》等有关规定，国家质检总局制定了《工业企业产品质量分类监管试行办法》，现予以公布。各省（区、市）质量技术监督部门应结合本地实际，抓好贯彻实施。  附件：工业企业产品质量分类监管试行办法  二〇一二年五月八日  **工业企业产品质量分类监管**  **试行办法**   1. **总 则**   **第一条** 为了指导地方质量技术监督部门（以下简称质监部门）加强产品质量监督，提高监管效能，督促生产企业落实质量安全主体责任，根据《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国务院关于加强食品等产品安全监督管理的特别规定》、《中华人民共和国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条例》、《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等有关法律法规，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适用于对涉及公共安全、人体健康和生命财产安全的重要工业产品生产企业（有关法律法规和职能分工明确由质监部门负责产品质量监督的企业）实施产品质量监督的分类管理。食品、食品添加剂、食品相关产品、化妆品、计量器具以及特种设备生产企业的监管不适用本办法。有其他专门规定的从其  规定。  **第三条** 本办法所称分类监管，是指质监部门根据产品质量安全风险程度、企业履行产品质量主体责任情况和实现程度，在对企业分类的基础上，为履行产品质量监督职能所实行的综合监管模式。  **第四条** 分类监管工作遵循统一管理、分步实施、科学高效、公平公正的原则。  **第五条**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以下简称国家质检总局）管理和指导全国工业企业产品质量分类监管工作（以下简称分类监管工作），制定企业分类原则和监管制度，负责对各省（自治区、直辖市）质监部门实施分类监管工作情况进行监督检查。  各省（自治区、直辖市）质监部门（以下简称省级质监部门）按照本办法要求，结合本行政区域实际，制定本行政区域分类监管实施办法，组织实施本行政区域的分类监管工作，建立分类监管工作信息管理系统。各市（区）、县质监部门（以下简称基层质监部门）根据本地实际，具体负责开展企业分类、实施监管措施等工作。  **第六条** 从事分类监管工作的机构和人员应当忠于职守、勇于负责、依法行政、严格监管。  **第二章 企业分类**  **第七条** 企业分类是质监部门为实施产品质量分类监管措施，依据《工业企业产品质量分类监管通用规则》（以下简称《通用规则》，见附件），对企业履行产品质量主体责任的保障能力和实现程度进行分类的活动。  **第八条** 《通用规则》是基层质监部门对企业进行分类以及监督检查的主要依据。省级质监部门应结合本地监管工作实际，制定《通用规则》实施细则。  **第九条** 《通用规则》规定的分类监管信息主要包括产品质量安全风险程度信息、企业履行产品质量主体责任等信息。  **第十条**省级质监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企业分类信息的监督管理。基层质监部门依据《通用规则》和实施细则，主要通过日常监管活动收集辖区企业的分类信息，并负责核实和更新。  **第十一条** 依据《通用规则》，企业履行产品质量主体责任的保障能力和实现程度分为：AA、A、B、C等四个类别。  AA类企业：是指履行产品质量主体责任的保障能力强和实现程度好的优秀自律企业，能够认真遵守法律法规，有效运行质量管理体系，积极承担质量安全责任，保持产品质量持续稳定合格；  A类企业：是指履行产品质量主体责任的保障能力较强和实现程度较好的良好自律企业，能够自觉遵守产品质量法律法规，有效运行产品质量管理体系，保持产品质量持续稳定合格；  B类企业：是指具有基本的履行产品质量保障能力的企业，产品质量基本保持稳定，无经查实的媒体曝光和消费者反映强烈的产品质量问题；  C类企业：是指履行产品质量主体责任保障能力较差的企业，在近3年省级以上产品质量监督抽查中出现2次（含）以上不合格情况，或存在拒绝产品质量监督抽查行为，或存在产品质量行政处罚记录，或存在经查实的媒体曝光及消费者反映强烈的产品质量问题。  所有企业必须完整真实地保存履行产品质量主体责任的记录。  **第十二条** 基层质监部门依据《通用规则》和实施细则，对辖区企业进行分类，并将企业分类报上级质监部门备案。  **第十三条** 企业分类情况属产品质量监督工作信息。企业不得将分类结果印制于产品标志，不得用于广告、宣传等商业目的。  **第三章 分类监管方式**  **第十四条** 基层质监部门根据企业分类情况，结合本辖区企业实际，对企业实施的监督检查形式主要包括：产品质量监督抽查、定期监督检查、专项监督检查和回访。  **第十五条** 定期监督检查是指质监部门有计划地对企业进行的监督检查和日常巡查。为避免重复检查，原则上由省级质监部门统一制定本行政区域的定期监督检查或日常巡查计划，由基层质监部门依据《通用规则》和实施细则规定的项目对企业实施定期监督检查。  **第十六条** 专项监督检查是指质监部门对产品质量安全问题突出的重点产品、重点企业和重点行业，开展的专门性监督检查。  **第十七条** 回访是基层质监部门对监督检查中发现的企业产品质量问题、质量违法行为整改落实情况的核查。  **第十八条** 基层质监部门按省级质监部门制定的实施办法，结合本地实际确定对不同类别的企业实施不同的监督检查形式。原则要求如下：  （一）对AA类企业实施信用监管方式，主要监督检查企业落实自我承诺情况。  1. 企业每年定期向质监部门报告自我承诺落实情况，积极回应、有效解决社会各方面反映的产品质量问题；  2. 质监部门根据需要对企业自我承诺落实情况进行监督检查；  3. 质监部门支持其积极落实产品质量主体责任，优先推荐其申报政府质量奖等质量奖励。  （二）对A类企业实施责任监管方式，主要监督企业落实产品质量主体责任情况。  1. 企业每年定期向质监部门报告产品质量主体责任落实情况，积极回应、有效解决社会各方面反映的产品质量问题；  2. 质监部门根据监管需要及社会反馈信息对企业落实产品质量主体责任情况进行监督检查；  3. 质监部门指导和支持其不断提升履行产品质量主体责任的能力。  （三）对B类企业实施常态监管方式，主要采取以下监管措施：  1.企业每年定期向质监部门报告产品质量主体责任落实情况，积极回应和解决社会各方面反映的产品质量问题；  2. 质监部门根据本地实际开展监督检查；  3. 质监部门指导企业不断完善质量管理、检验检测、计量和标准体系，增强履行产品质量主体责任的意识和能力。  （四）对C类企业实施加严监管方式，根据产品风险程度和企业实际，主要采取以下监管措施：  1.企业每年定期向质监部门报告产品质量主体责任落实情况，积极回应和解决社会各方面反映的产品质量问题；  2.质监部门将其列为本辖区重点监管企业；  3.质监部门根据实际情况，按照加严监管的要求开展监督检查。  4.根据监督检查情况，对未有效履行产品质量主体责任的企业负责人进行履责约谈，并责令企业限期整改。  5.对已经获得的质量奖励和其他质量扶持政策，依据相关规定取消或建议有关部门予以取消。  **第十九条** 基层质监部门对企业实施监督检查时，可依法采取查阅资料、现场核查、产品抽样检验等方式。实施监督检查不得影响企业正常生产经营，不得谋取不正当利益。企业应当依法主动配合监督检查，如实提供有关资料、回答相关询问。  **第二十条** 国家质检总局根据工业产品质量安全风险信息开展风险等级评估，将工业产品质量按风险程度分为Ⅰ级（高风险）、Ⅱ级（较高风险）、Ⅲ级（一般风险），并动态发布重点工业产品质量监督目录。质监部门结合辖区内工业产品及企业实际进行评估后，可以增加本地区的Ⅰ级（高风险）和Ⅱ级（较高风险）产品目录。  基层质监部门对确定为Ⅰ级（高风险）产品的生产企业应按照从严监管的原则，将监管方式按照本办法第十八条有关规定相应下调一级；对确定为Ⅱ级（较高风险）和Ⅲ级（一般风险）产品的生产企业，可结合辖区内的实际情况，适当调整监管方式。  **第二十一条** 质监部门结合监督检查情况，根据本办法规定的职责权限，对企业的分类和分类监管方式实行动态调整。调整周期原则上为1年。对企业的分类不允许越级上升，但可以越级下降。企业出现下列情形之一的，应当作降级处理，并相应调整监管方式：  （一）违反相关质量法律法规规定，受到行政处罚的；  （二）企业质量保证能力存在严重隐患的；  （三）产品质量监督抽查出现不合格的；  （四）发生经查实的消费者反响强烈或新闻媒体曝光的产品质量问题的；  （五）出现其他应当降级处理情况的。  **第二十二条** 质监部门在实施分类监管中发现企业存在质量违法行为的，应依照相关法律法规处理。  **第四章　附　则**  **第二十三条** 本办法规定的分类监管是对企业履行产品质量主体责任的综合监管模式，不代替相关法律法规规定的其他产品质量监督措施。  **第二十四条** 本办法由国家质检总局负责解释。  **第二十五条** 本办法自公布之日起30日后施行。  附件：工业企业产品质量分类监管通用规则 |